

아트홀가얏고을 대관규정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아트홀가얏고을(이하 가얏고을) 내 시설 대여에 따른 원칙을 세우고, 이를 가얏고을과 대관자 상호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연장 운영과 올바른 공연문화를 정착시킴에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대관자가 가얏고을의 시설을 임차 및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 대관의 범위는 가얏고을의 기본시설, 부대설비의 사용을 포함한다.

제3조 (대관의 종류)

1. 공연대관 : 가얏고을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임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2. 리허설대관 : 공연 전 및 중에 공연 리허설을 위한 대관
3. 준비대관 : 공연 전 무대 준비를 위한 대관
4. 철수대관 : 공연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5. 녹음대관 : 녹음 작업을 위한 대관
6. 촬영대관 : 방송, CF, 영화 등의 촬영을 위한 대관
7. 연습대관 : 연습을 위한 대관
8. 행사대관 :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대관

제4조 (대관료)

1. 대관료는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가얏고을에서 정하며, 대관료는 별첨의 대관료 규정과 같다.
2. 계약금은 각 대관 계약시 상호간 결정하여 대관 계약서에 명시한다.

제5조 (대관료의 반환)

-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100%)
 2. 가얏고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100%)
 3. 대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가얏고을의 승인을 받은 경우(50%)
 4. 준비 및 철수대관 시 사용 신청한 횟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미사용 횟수별 50%)
 5.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 및 공연대관 취소분의 기납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대관신청)

- 대관자는 가얏고을 홈페이지(<http://gayatarthall.com>)에서 대관 안내 및 대관 일정을 확인하고, 대관신청서를 담당자의 이메일(gayatart@gayatarthall.com)로 송부하여 접수한다.

제7조 (대관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가얏고을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가얏고을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개인
3. 제1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4.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2회 이상 한 단체
5.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 또는 개인
6.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7. 기타 공연의 내용, 수준이 가얏고을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
8. 본 규약을 위반하려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입장권)

1. 모든 입장권은 가얏고을의 검인을 받은 후 발행한다.
2. 입장권은 가얏고을의 회원제도를 인정하여야 하며, 입장권의 할인율은 가얏고을과 대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대관자는 입장권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초과 발행할 수 없으며, 가얏고을은 가얏고을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가얏고을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관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가얏고을은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대관자의 행위제한)

- 대관자는 가얏고을과 협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승인내용(공연명, 공연내용, 공연일정, 공연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변경 행위
 3. 대관시설사용권의 매대 또는 양도 행위

제10조(홍보물)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게시는 가얏고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는 가얏고을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3. 대관자는 가얏고을 홈페이지 내 대관공연 홍보를 위하여 공연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공연관련 정보를 가얏고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저작권)

1. 대관자는 해당공연에 대한 저작권 및 수익권이 대관자에게 귀속되었거나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 하에 합법적으로 수용, 수익권이 취득되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2. 대관자는 해당공연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얏고을을 상대로 청구를 하거나 이의 또는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고, 여하의 경우에도 가얏고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얏고을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을 경우 대관자는 가얏고을이 입은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대관자의 의무)

1. 대관자는 대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가얏고을의 직원 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가얏고을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관자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종사자를 직접 채용할 수 있다.
2.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공연 7일 이전에 무대기술회의를 거쳐야 하며, 가얏고을이 요청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한다. 무대기술회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관자는 대관 시작 3일 전까지 가얏고을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무대기술회의 제출자료 : 무대 배치도, 공연대본, 악보, 공연진행, 큐시트, 셋업과 철수가 포함된 일정표, 출연자명단 등)
3. 대관자는 시설 사용일 7일 이전에 극장시설 이용 및 무대설치계획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외부장비 및 시설 반입, 가얏고을의 장비 및 시설을 변경할 때 가얏고을과 사전 협의하며, 가얏고을의 장비 및 시설을 변경시 대관 종료 즉시 변경된 장비 및 시설을 대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시키며, 반입한 장비 및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만일, 대관자가 원상복구 및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가얏고을이 직접 철거 및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하고, 가얏고을의 철거 및 폐기 조치로 발생한 반입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 가얏고을의 책임은 없다.
5. 대관자는 공연대관 시 공연을 녹음, 녹화 및 중계할 경우 가얏고을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장비 설치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가얏고을은 필요 좌석의 판매를 유보할 수 있다.

제13조(해약 및 정지명령)

- 가얏고을은 대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대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대관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국가적 행사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 공안질서유지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6. 제7조 각호를 위반 하였을 때
 7. 기타 관계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배상책임)

1. 가얏고을은 제13조에 해당되어 대관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대관자는 대관시설 및 설비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가얏고을에게 손해를 끼쳤을 시 즉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대관의 내용을 대관자가 무단으로 변경시, 가얏고을은 이에 대하여 추가 대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공연(행사)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적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대관 계약에 따르며, 분쟁발생 시에는 가얏고을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2017년 11월 11일
아트홀가얏고을 대표

